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산정기준

**제 1 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 히스토리투자자문(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 3 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수료)**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과되는 수수료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상장사)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 가. 기본수수료
  - 나. 성과수수료
2. (비상장사)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 가. 기본수수료

## 나. 성과수수료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 1의 수수료 부과기준표와 같다. 다만, 투자자문자산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특성, 규모, 성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이 결정하여 별도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수수료의 통보)** 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투자자문 기본수수료·일임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그 시기,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제3조에 의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아래에 의한다. 다만, 개별투자자와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별투자자별 부과절차에 의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에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계약자산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제1호의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미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7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투자자는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전액을 즉시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 8 조 (경과규정)** 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의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 9 조 (설명 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별지1)

## 수수료 부과기준표

### 1) 상장 회사

구분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지급
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계약	계약자산의 0%	초과수익의 15%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계약자산의 1.5%	초과수익의 10%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계약자산의 3%	초과수익의 0%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2) 비상장 회사

구분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지급
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계약	계약자산의 0%	초과수익의 20%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계약자산의 1.5%	초과수익의 15%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계약자산의 3%	초과수익의 5%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